

노인인권보호 지침

▶ 초도 노인요양원

노인인권이란?

'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 할 수 있는 권리'
'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 받지 않을 권리'

노인학대란?

노인에 대하여 신체적·정신적·성적·경제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기타
학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.(노인복지법 제4조)

노인학대특성

지속성	복합성	반복성	은밀성
오랜 기간 동안	가족 내에서 복합	노인학대는 한번	남에게 알리고 싶
노인학대가 발생	적이고 상호적인	이 아닌 반복하여	아하지 않을
되었음	원인이 존재함	발생함	

노인학대 유형

신체적 학대

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해
고통,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

- ▶ 주먹 등을 때리거나, 발로 찬다.
- ▶ 밀어서 넘어뜨린다.
- ▶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.
- ▶ 칼 등의 흉기로 위협한다.
- ▶ 강제로 일을 강요한다.
- ▶ 침대 등에 묶거나 강제로 가두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.
- ▶ 불필요한 약물을 강제로 먹게 한다.
- ▶ 꼭 드셔야 할 약물을 못 먹게 한다.



노인학대 유형

정서적 학대

비난, 모욕, 위협,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
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

- ▶ 고향을 지르거나 욕을 한다.
- ▶ 이성교제, 사회활동, 종교활동을 방해한다.
- ▶ 자신에 대한 주요 결정 과정에서 소외시킨다.
- ▶ 대화를 거부하거나 무시한다.



성적 학대

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(성희롱, 성추행, 강간) 등 노인의 의사에
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

- ▶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몸을 만진다.
- ▶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적인 농담이나 행동을 한다.
- ▶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성적 부위를 드러내고 웃이나
기저귀를 교체한다.



● 노인학대 유형

경제적 학대

노인의 의사에 반(反)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,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, 경제적 권리와 관련 된 의사결정에 대한 통제 등을 하는 행위

- ▶ 허락 없이 재산 및 임금을 가로챈다.
- ▶ 허락 없이 인강을 사용하여 피해를 준다.
- ▶ 재산 관리 또는 사용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다.

유기

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

- ▶ 인력을 두들기고 왕래하지 않는다.
- ▶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을 두절한다.
- ▶ 낯선 장소에 버린다.

● 노인학대 유형

방임

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, 비의도적으로 거부,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

- ▶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돌봄을 제공하지 않는다.
- ▶ 생활비가 없는 노인에게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지 않는다.
- ▶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노인을 방치한다.

자기방임

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다.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

- ▶ 자신을 돌보지 않고 자해하거나 돌봄을 거부하여 생명에 위협 받는다.

● 노인학대 처벌 규정 (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처벌 기준)

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	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
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행위	
·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·성희롱 등의 행위	
· 유기하거나 의사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,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	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
· 구걸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	
· 노인을 위하여 들어, 들어된 금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	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신고인 신분보호 및 신원노출 금지의무 위반자	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
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임무 방해한 자	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

노인학대 신고방법 및 절차

☞ 노인학대 신고 의무

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.

☞ 노인학대 신고 방법

노인학대 사례 발견 시 129 또는 1577-1389 등으로 전화, 서신, 온라인 등을 이용

☞ 신고내용

- 피해노인의 이름, 성별, 나이, 주소, 전화번호
- 노인의 학대상황과 입은 상처나 피해에 대한 설명

☞ 신고자의 비밀보장

· 노인전문기관 및 상담원은 신고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며, 신고한 여부는 는 경우 사례에 대한 결과를 제공 받을 수 있다. (노인복지법 제 39조의 6 제 3항)

시설생활 노인의 권리

-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, 차별, 착취, 학대, 망언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
 -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돌봄(care)과 서비스 제공 요구하고 적당 비용 지불 권리
 - 안전하고 기쁘고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
 - 시설 내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
 - 개인의 사상, 신념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
 - 우편, 전화 등 개인적 연락을 주고받을 권리
 - 정치적, 문화적, 종교적 활동에 재약을 받지 않고,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
 -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
 - 비난이나 재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만을 표현하고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리
 - 시설 내외부에서 개인활동,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
 - 시설 입소, 입소상환, 서비스 이용, 재입소 생활 등 참여 등 개인적 생활을 행할 권리
 -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
2022. 9.

2022-09

노인 형태를 예방하려면 (시선운동 음악정)

- ▶ 노인권력 시에서 확대해위자는 노인의 가족, 동료노인, 외부인뿐 아니라 시선과 정과 직면할 수 있다.
- ▶ 노인가해행위자가 되지 않도록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에 대한 공방을 인식할 것을 성립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.

[illegible]

- ▶ 서식의 불충분 환경 조성을 위한 민·관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.